

공제금 / 중간정산금 / 해약환급금 청구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며, 공제금 외에 이 계약에 관하여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있을 경우 아울러 반환을 청구하오니 아래「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 수령계좌」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구자	①성명		②서명 또는 날인*		③주민등록번호	
	④주소				⑤계약자(수급권자)와의 관계	
					⑥휴대전화	

* 우편 송부시에는 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 수령계좌 *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의 대표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

⑦거래은행	은행	⑨예금주		* 계좌압류여부 (자필기재)
⑧계좌번호				압류중 / 정상
⑩압류방지계좌 여부	☐ 예 ☐ 아니오			* 수령계좌의 압류여부 필히 확인

*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수령계좌 통장사본 첨부 * 공제금/중간정산금의 경우에만 압류방지계좌 사용 가능/여부 체크

○ 계약 관련 기재사항 및 지급관련 확인사항

⑪계약자 성명		⑫공제계약번호	
⑬청구사유 발생일	20 년 월 일	⑭공제금 지급방법	☐ 일시금 ☐ 분할지급

* 분할지급 선택시 [별지 17-2회 분할공제금 청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("사망, 중간정산, 일반해약"시 분할지급 선택불가)]

* 분할지급 신청시에도 공제금 외의 반환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
* 공제금(해약환급금) 지급연도의 납부부금 및 중간정산금 지급연도의 지급이전 납부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* 일반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세 포함) 원천징수되며,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. 다만, 부금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'경영악화'(사업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감소)를 사유로 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 및 장려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)

⑮ 청구사유 (해당 사유에 √표시 해주십시오)				
구분	공제금	중간정산금	간주해약환급금	일반해약환급금
☐ 개인사업자 ☐ 법인대표자	☐ 폐업 ☐ 공동사업자의 탈퇴 ☐ 해산 ☐ 사망 ☐ 노령 (만 60세 이상,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자의 청구) ☐ 질병·부상에 의한 퇴임 ☐ 자연재난 ☐ 사회재난 ☐ 질병부상 ☐ 회생 ☐ 파산	☐ 자연재난 ☐ 사회재난 ☐ 질병부상 ☐ 회생 ☐ 파산	☐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☐ 질병·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	☐ 임의해약 -자기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-임의해약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☐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 (천재·지변의 발생, 해외이주, 3개월이상 입원치료·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발생, 중앙회의 해산,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발생,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약) *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필요 (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8의3서식) ☐ 24개월 이상의 부금납부미납으로 중앙회에 의한 계약해지 ☐ 계약자의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계약해지

*중간정산 청구 시 차기 수납 예정 부금과 장려금 등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을 지급하며,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.

⑯ 상속인 일부지급 청구비용 (*계약자 사망에 의한 청구시)	(법정상속비용)	%	
※ 이면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			
접수 시 확인사항 (√표시)	담당	부장	
☐ 청구자 본인 확인 ☐ 청구자 신분증 사본			

(2021. 8. 1 개정 시행), (2024. 5. 9. 개정 2024. 6. 1. 시행), (2025. 1. 1. 개정 시행), (2025. 2. 28. 개정 2025. 7. 1. 시행), (2025. 6. 23. 개정 2025. 7. 1. 시행)